

제 1306 호
1986. 8. 11

발행인 : 서울특별시청 영 비 관
편집인 : 공 보 관 이 관 우
전화 : 731-6111-3
발행처 : 서울특별시 통합발전실
전화 : 735-3337

선 경 공 보 관	등	간 제 (용 안 이)	공 보 관
출판일시 1986. 8. 11	시	보 도 계 장	
처리과	관		

시 보

차 례

- ☺ 공문시행
 - 서울시지방 사무관대우의선발기준에관한지침 및 '86년도동선발계획 ... 2
 - 대한민국헌행법명집제 98 회추 례배부 9
- ◎ 훈 령
 - 제 641 호 : 서울특별시통계사무운영규정중개정규정 10
- ◎ 공 고
 - 제 444 호 : 도시계획(안) 공람공고 11
- ◎ 사 령

공									
발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또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86, '88은 너와나의 보람

(관 인 생 략)

서 울 특 별 시

인사 01110-2779

(731-6221)

1986.8.

수신 : 수신처 참조

제목 : 서울시 지방사무관 대우의 선발 기준등에 관한 지침 및 '86년도 동 선발계획

- 1. 국행삼 01110-264('86.7.30)호와 관련임.
- 2.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 31 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시 지방사무관 대우의 선발 기준등에 관한 지침 및 '86년도 동 선발계획을 별첨과 같이 통보하니 동 계도가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선발기준에 의거 적격자를 엄선하여 기일엄수 추천하기 바람.

- 첨부 : 1. 서울특별시 지방사무관 대우의 선발 기준등에 관한 지침
 2. '86 서울특별시 지방사무관 대우 선발계획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처 : 산하 전기관.

서울특별시 지방사무관대우의 선발기준등에 관한 지침

1. 근거: 지방공무원임용령 제 31 조
(사무관대우의 선발등)
2. 명칭: 지방사무관 대우
3. 지방사무관대우의 선발
 - 가. 선발대상: 서울특별시 일반직 6
공무원 (국가공무원 포함)
 - 나. 선발규모: 27 명

다. 선발자격요건

- 6급으로 서직한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이 20년 이상이며 (병역법상 과한 휴직기간, 공무원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포함) 연령이 45세 이상인 자로서
- 소속 기관장에 의하여 실무수행능력이 우수하고 필수요건으로 인정되는 자

(* 선 발 제 외 대 상)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 34 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이 제한되는 자
 - 정계처분, 직위해제, 유직중인 자
 - 정계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정직은 18월, 감봉은 12월, 견책은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선발기준일 현재 정년연장자

라. 선발절차

(1) 선 정

- 선발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공무원재직중 5급에의 일반승진시험에 응시를 포기하고 지방사무관대우로 선발되기를 희망하는 자는 소속기관장에게 별지 1호 서식에 의한 "지방사무관대우 선발신청서"를 제출하고
- 소속기관장은 이를 확인하여 자기관별로 순위를 정하여 별지 제 1호 및 제 2호 서식에

의거 서울특별시장에게 추천한다.

(2) 자체심사 및 선발

- 서울특별시장은 지방사무관대우 선발신청서를 접수하여 이를 보통승진임용심의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결정한다.
- 이 경우 서울특별시장은 당해기관의 기능과 성격, 정원 및 자격요건 해당자수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사무관대우 대상자를 선발하되 다음의 순위기준에 의한다.

〈 * 지방사무원대우 선발순위〉

1. 담당업무의 특수성과 숙련성이 특별히 인정되는 직무중사자
2. 승진후보자 명부작성을 같이하는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순위가 앞선자
3. 승진후보자명부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6급 재직년수가 오래된 자,
6급 재직년수가 같은 때에는 총재직년수가 오래된 자
4. 해당 업무분야의 자격증 소지한 자

- 서울특별시장은 자기관별로 선
발된 인원을 해당기관장에게 통
지한다.
- 4. 지방사무원대우에 대한 인사관리등
가. 5급에의 승진제한
 - 지방사무원대우로 선발된 자

에 대하여는 5급에의 일반승진
시험을 응시케 하거나 승진임용
할 수 없다.

- 다만 지방공무원임용령 제 38 조
의 4 규정에 의한 특별승진임용
은 제한되지 않는다.

- * 청백리 포상을 받은 경우
- *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총무처장관의 협의불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경우
- * 제안의 채택으로 창안 등급 동상이상을 받은 경우

나. 전보 및 보직관리

- 지방사무원 대우로 선발된자는
지방사무원대우의 자격을 포기할
수 없다. 다만, 소속장관을 달리
하는 기관으로 전보하게된 경우
에는 종전의 기관에서 선발된
사무원대우(국가직, 지방직포함)
의 자격을 상실한다.
- 기관내에서의 전보는 축적된
경험과 실무수행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관련된 직무
분야에 보직하여야 하며

- 직제상 6급 공무원이 보임될
수 있는 직위중 보다 책임있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 근무수행 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사무원대우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p>다. 보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사무관대우로 선발된자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제 5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월 6만 5천원의 정려수당을 지급한다. <p>5. 기타수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급단위 기관장은 특히 지방사무관대우의 추천에 공정을 기하고 앞으로 농재도가 정착 발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요망 <p>1986년도 서울특별시 지방사무관대우선발계획</p> <p>1. 선발예정인원 : 27명</p> <p>2. 선발대상 : 서울특별시 일반직 6급 공무원 (국가공무원 포함)</p> <p>3. 신 청</p> <p>가. 신청자격</p> <p>’86. 8. 12. 현재 6급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자로서 공무원 근속기간이 20년 이상이며, 연령 45세 이상인 자.</p>	<p>나. 신청기간 : ’86. 8. 12 ~ ’86. 8. 18</p> <p>4. 추 천</p> <p>가. 추천기준 및 방법 : 지방사무관대우의 선발기준등에 관한 지침에 의함.</p> <p>나. 추천기한 : ’86. 3. 21</p> <p>5. 지방사무관대우의 선발</p> <p>가. 선 발 : 보통승진임용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특별시장이 선발</p> <p>나. 선발예정일 : ’86. 8. 27</p> <p>6. 지방사무관대우 시행일 : ’86. 9. 1</p> <p>7. 기타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계획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사무관 대우의 선발기준 등에 관한 지침에 의함. ○ ’86 지방사무관대우 시행에 소요되는 예산 (정려수당) 7,020천원은 ’86 본예산에서 집행함.
--	--

(별지 1)

지방사무관대우선발신청서

소 속		직 명 (직위)	
성 명 (한자)	()	주민등록 번호	
현 주 소		연락전화	직 지 장 : :
6 재직기간	~현재 (년 월)	총 재 직 기 간	~현재 (년 월)
포 상	종 류	징 계	종 류
	수상일자		징계기간
직위해제	기 간	사 유	자 호
일반승진 시험응시 회	제 회	자 격 증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 31 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사무관 대우의 선발을
신청합니다.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담당직무와 관련된 자격증 사본 1부
 3. 5급에의 일반승진시험 포기서 1부

신 청 인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소속단위기관장)

서울특별시 장 귀 하

(별지 2)

지방사무관대우추천서

기관명 : _____

추천 순위	소 속	직 류	성명 (한 자)	생년 월일 (년 월 일)	6 급 임용일 (채직 기간)	공무원 임용일 (채직 기간)	승 진 후보자 명 수	진 부 용 회	일반승 진시험 시 수	포상종류 (모 법 공무원 포함)	징계 (종 류)	직위해제 (기간및 사유)	비고 (자격 동등)
			()	()	(년월)	(년월)						개 월 호	

* 추천대상자 선발 순위별로 당해 공무원의 경력 및 직위의 특성과 지방사무관 대우로서의 선발 필요성등을 개인별로 별도 작성 첨부 하여야 함.

(별지 3)

5 급에 의 일반승진시험 포기서

- 소 속 :
- 직 급 :
- 성 명 :

위 본인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사
 무관대우로 선발된 경우에는 공무원 재직중 5급에의 일반승진시험에 응시
 할 것을 포기합니다.

1986 .

위 본 인

인

서 울 특 별 시 장 귀 하

관 인 생 략

서 울 특 별 시

법무 02142 307 1986.8.12.

수신 수신처 참조

제목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제 98 회 추록 배부

1.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제 98 회 추록을 다음과 같이 배부하니
수령 즉시 가제정리하여 법령집 활용에 차질 없도록 할것.

가. 배부기간 : 86.8.13-8.16

나. 배부대상 :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보유부서

다. 배부장소 및 방법

- 본청 : 법무담당관실에서 각과 분임물품 출납원 인장 날인 수령
- 구청 및 사업소 : 운송배부

2. 대분보유부서는 가제정리 상태를 점검하여 변경리된 추록을 제 98 회
추록과 함께 수령, 정리하여 법전관리에 철저를 기할것. 끝.

* 이 내용에 관한 시행문은 따로 보내지 아니함.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처 서관1, 서과1-5,9,10,16,18,21,23-32,34-37,39,43,44,46-50
52,53,56,59-65, 서구1-17, 서보1-7,10,12,15.

서울특별시 통계사무 운영규정중 개정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1986년 8월 11일

서울특별시장 염보현

훈 령

◎서울특별시 훈령 제641호

서울특별시통계사무운영규정중 개정규정

서울특별시 통계사무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호중 “통계글 말하며 지정
통계 목록은 별표1, 별표2와 같다”
를 “중앙지정 통계와 자체지정 통계를
말한다”로 한다.

제6조 제2항중 “통계심사관 또는 통
계자료의”를 “통계 자료의”로 하고
“통계담당관”을 “통계심사관”으로
한다.

제7조 제1항제1호중 “별표1 목록을”
를 “중앙지정 통계 목록을”로, “통

계담당관”을 “통계심사관”으로 하고,
제1항제2호중 “별표2의 목록을”
를 “자체지정 통계 목록을”로
“통계담당관”을 “통계심사관”으
로 하며,

제4항중 “별표1”을 “중앙지정
통계”로 한다.

제8조 제1항 본문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를 “각급기관에 다음 각호
의 사항을”로 하고 제2항중 “심
의회 위원장은”을 “본청의 통계
조정심의회 위원장은”로 하며,
제3항을 제4항으로, 제4항을 제5
항으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기타 기관의 통계조정 심의회 위
원장은 각급 통계 심사관의 직상
급자로 하고 위원은 10이내의 통
계 관련 부서장으로 한다.

제10조 제1항중 “지정통계 목록
(별표1,2)”를 “지정통계 목록”으로 한다.
(별표1), 및 (별표2)는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제 444 호

도시계획(안)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도봉구 상계동 373의 24-176의 21건의 1개소 도시계획시설(도로)입안에 따른 도시계획안을 도시계획법 제16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2 규정에

○ 도시계획안

시설명	구분	등급	유별	폭(m)	연장(m)	기점	종점	비고
도로	기정	소로	2	8	176	상계동 372-24	상계동 176-31	
	변경	"	2	8	176	"	"	체지
	기정	"	2	8	74	상계동 389-546	상계동 389-493	
	변경	"	2	8	74	"	"	기

* 도면생략

사 령

◎ 1986년 8월 7일

경제 54 호

성명	발령사항	원부서	직급
최진호	부직을 영함 내무국 근무	종로구	지방행정사무관

-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아래장소에서 일반인에게 보인다.
 2.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때에는 공람기간내에 의견서를 공람장소에 제출하기 바람.
- 가. 공람기간:

'86.8.11 ~ '86.8.21

나. 공람장소: 도봉구청 도시경이과

1986. 8. 11

서울특별시장

◎ 1986년 8월 7일					명제 348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김재진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북부위생처리장	지방기계장 (6등급)	
◎ 1986년 8월 9일					명제 349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이숙진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보건환경연구소	지방병정직 8급 상당	
◎ 1986년 8월 11일					명제 350호
성명	발령부서	직위(호봉)	직급	비고	
나경호	보건환경연구소	공해측정기사 (2호봉)	지방병정직 8급상당	신규	
◎ 1986년 8월 11일					명제 352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권택상	국가안전기획부 과전근무를 명함. '86 아주대회 안전대책기구 운영 요원('86.8.11 - 10.15)		내무국	지방행정사무관	
안현호	"		"	"	
목영만	"		"	"	
가. 여행명령사항					
소속	직위(직급)	성명	여행국	여행기간	여행목적
목동지구개발 사업소 설비공사와	기계장 (지방기계과) (지방기계 기사보)	정보희 이홍범	스위스	86.8.6- 8.18 (13일간)	목동아파트(2-6공구) 자동제어 설비물품점수 및 지역난방시설 전략

나. 해외훈련자 인적사항 (2명)								
소속	직급	성명	생년월일	어학성적	비고			
재무국 세정과	지방행정사무관	김기춘	55.9.6	TQEFL 580 점				
기획관리실 통계담당관		김상범	57.8.31	583 점				
다. 훈련내용								
성명	과견국	훈련기관	훈련분야	훈련기간	과업기간			
김기춘	미 국	펜실바니아 - 주립대학	도시세징	86.8.18-	86.8.11-88.6.2			
				88.5.18	(약 22개월)			
김상범		위스콘신 - 밀워키대학	도시경제	86.8.21-	86.8.14-88.6.6			
			(교통중)	88.5.22	(약 22개월)			
라. 교육훈련비								
- 전액 시비로 부담하되 국가지급 기준에 준함. (단위: US \$)								
성명	총액				국가지급액			
	계	학자금	항공료	체재비	계	학자금	항공료	체재비
김기춘	32,331	12,500	1,700	18,131	9,335	3,125	850	5,360
김상범	31,422	11,706	1,558	18,158	9,065.5	2,926.5	779	3,360
계	63,753	24,206	3,258	36,289	18,400.5	6,051.5	1,629	8,720
* 1) 훈련비 지급액 산출은 별첨 내역서에 의함. 2) 체재비에는 생활준비금 \$ 500 포함. 3) 교육훈련비 총액은 공무원 특별훈련 규칙 개정과 따른 체재비 조정, 학자금 변동등에 따라 다소 가감될 수 있음.								